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 2022-62호

‘22년도「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지원사업」 교육기관 모집 공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인「**2022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실시할 **위탁 교육기관의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 유의사항

본 공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2022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 사업 계약내용 등에 따라 추진되며, 계약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21.5)에 따라, 기능등급보유자 대상 **기능등급별 역량형성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기능등급제)** 현장경력·자격·교육이력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기능등급 부여

○ 본 공고를 통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직종(전체 49개) 중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공모·선정** 추진

* **(6개 교육직종)** 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사업 주요내용 >

- **(교육기간)** ‘22.12월 ~ ’23.3월(예정)
- **(교육인원)** 목표 2,000명
- **(교육직종)** 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기능등급제 6개 시행직종)
- **(교육대상)** 해당직종의 초·중급 기능등급보유자
- **(교육일수)** 1회 당 4일 과정(1일 6h x 4일)

※ 교육사업 내용 등은 대내외 사항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9.(수) ~ 2022. 11.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방 문 : (045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기능등급관리팀(다동, 국제빌딩)
- 이메일 : grade@cw.or.kr

※ 신청 교육기관은 공모기간 중 공제회로 서류 정상접수 여부 등 필히 확인요망

□ 선정절차

○ 모집공고 후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교육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 교육기관 선정 추진절차 >

※ 교육기관 세부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등 8page 참조

2. 교육기관 신청자격 및 필수요건

□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교육·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건설기능 및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능 및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위탁받아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필수요건

○ 교육시설, 교사 및 행정직원 요건

교육시설(㎡)		교사(명/직종별)		행정직원(명)
실습실	강의실	이론	실기	
1인당 10㎡ 이상 (20인 기준 200㎡ 이상)	1인당 1.8㎡ 이상 (20인 기준 36㎡ 이상)	2	1	1

▪ **(이론교사 요건)** 기본소양 교육 교사(1명), 교육직종 이론교육 교사(1명)으로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음

- **(기본소양 이론교사)** 건축 시공, 안전, 품질관리 등 업무 분야에서 건설현장 경력 또는 강의 경력 등이 3년 이상인 자(건설회사 공무담당자, 교수, 교사 등)

- **(교육직종 이론교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해당 직종 현장근무 경력 또는 강의경력 등이 3년 이상인 자

※ 실기교사 요건 충족자는 해당 **'교육직종 이론교사'** 병행 가능(기본소양 이론교사는 배치해야함)

▪ **(실기교사 요건)** 해당 교육직종 관련 건설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이론 및 실기교사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교육시설) (예시)** 교육과정 정원 10명 신청 시 실습실 100㎡ 이상, 강의실 18㎡ 이상 요건 충족 필요
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교육약정 기간 동안 계속 임차해야함

※ 교육시설(실습실 및 강의실) 전용 공간만 인정

▪ **(행정직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관련 예산, 사무 업무 등을 담당할 행정직원 1명 필요(교사와 겸임 불가)

▪ **(기타사항)** 상기사항은 1개 교육직종 신청 시 기준으로, 교육직종 복수 신청 시 교육직종별로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과정 신청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승급교육(6개 직종, 12개 과정)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3.3월(예정)

※ 사업기간은 교육인원 및 예산소진 등 대내외 사항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직종)** 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① 초급 필수교육(초급 기능등급보유자),
② 중급 필수교육 운영(중급 기능등급보유자)

○ **(교육내용)** 기본 소양교육, 이론교육, 실기교육

○ **(교육일수)** 과정 당 총 4일(24h) ※ 1일 6h x 4일

< 교육 목표인원(2천명) >

(단위 : 명)

구 분	초급 필수교육 (중급 승급)	중급 필수교육 (고급 승급)
6개 교육직종	2,000명	

※ 기관별·직종별·과정별 교육인원 배정 등은 교육기관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인원 달성 및 예산 소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승급교육 교육과정 운영(안) >

구 분		초급 필수교육(중급 승급)	중급 필수교육(고급 승급)
교육대상		해당 교육직종 초급 기능등급보유자	해당 교육직종 중급 기능등급보유자
교육방법		집체 교육	집체 교육
교육시간		24시간(1일 6시간, 4일 과정)	24시간(1일 6시간, 4일 과정)
이수기준		출석률 20시간 이상	출석률 20시간 이상
내용 구성	기본소양교육	1일(25%)	1일(25%)
	이론교육	1일(25%)	2일(50%)
	실기교육	2일(50%)	1일(25%)
일차별 세부 교육내용 구성		·1일차: 초급 이론 과목 + 기본소양 (윤리, 안전, 품질관리 기초 등) ·2일차: 중급 이론 과목 ·3일차: 중급 실기 과목 ·4일차: 중급 실기 과목	·1일차: 중급 이론 과목 + 기본소양 (윤리, 안전, 품질관리 기초 등) ·2일차: 중급 이론 과목(시공 관련) ·3일차: 고급 이론 과목 ·4일차: 고급 실기 과목

※ 세부 교육내용 등은 붙임3. 기능등급제 직종별 교육계획서 참조
상기 내용은 국토부 방침 및 세부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 **교육과정 신청방법**

○ 교육직종 단위로 교육과정 신청 가능

- **(예시)** A기관이 **형틀목공 교육직종 신청** 시 **초급 필수교육, 중급 필수교육 2개 과정**을 모두 운영해야함(붙임1 서식에 3.교육과정 운영계획 작성)

○ 교육직종은 1개 이상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동일한 실습장소, 동일 장비, 동일 교사 등을 중복하여 여러 교육직종 신청 불가

※ 교육직종이 다수인 경우 직종별로 실습장소, 장비, 교사 등은 별도 구비 및 분리 필요

○ **교육과정별** 정원은 20명 까지 편성 가능(1인당 10㎡ 이상 실습장 요건 등 충족 필요)

4. 지원기준

○ 교육기관에게는 **교육생 출석 인정일수***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하고 **교육생**은 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 **교육지원금** 지원

* **(출석 인정일수)** 교육생이 1일 5시간 이상 출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당월 교육비와 교육지원금은 **다음 달에 월단위로 지급**

- **(교육비)** 교육기관에게 지급되는 교육비용으로서 교육생의 출석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

* **(교육비)** = 당월 교육생의 출석 인정일수의 합계 X 1일 교육단가

- **(교육지원금)** 개별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교육지원금(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 출석 인정일수에 따라 교육지원금 지급

* **(교육지원금)** = 교육생 출석인정 일수의 합계 X 27천원

< 교육직종별 1일 교육 단가(교육비 및 교육지원금) >

교육직종	교육비 (교육기관)	교육 지원금 (교육생)	1일 교육단가 (교육비+교육 지원금)
형틀목공, 건축배관, 타일, 도장	63천원/일	27천원/일	90천원/일 (4일 기준 36만원)
조적, 방수	53천원/일	27천원/일	80천원/일 (4일 기준 32만원)

※ 세부 교육비 지급 절차 및 기준 등은 변동 될 수 있음

5. 추진방식 및 사업 주체별 역할

○ 교육관리전문기관인 공제회에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을 갖춘 교육기관을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재위탁 약정 체결

□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시행계획 및 방침 등 수립 · 예산 편성 및 교부, 정산 등 · 교육제도 운영 관리 등
교육관리 전문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사업 위탁 운영 관리 · 위탁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점검 · 교육생 출결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과정 개발(전문기관 위탁 등) · 교육예산 집행 및 교육 결과에 따른 비용 정산 · 교육과정 평가 및 홍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교육기관	· 교육생(기능등급보유자) 모집 및 홍보 · 기능등급제 과정별 교육계획서 등 제출 · 기능등급제 교육실시 및 과정 운영(출결관리 등) · 교육비 등 예산 관련 제반업무 수행 · 교육생 및 교육기관 담당자(교사, 행정직원 등)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생) 회차별 1회 이상 ▲교육기관 담당자 : 1회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 · 국토교통부 및 교육관리전문기관의 교육 관련 요청사항 수행

□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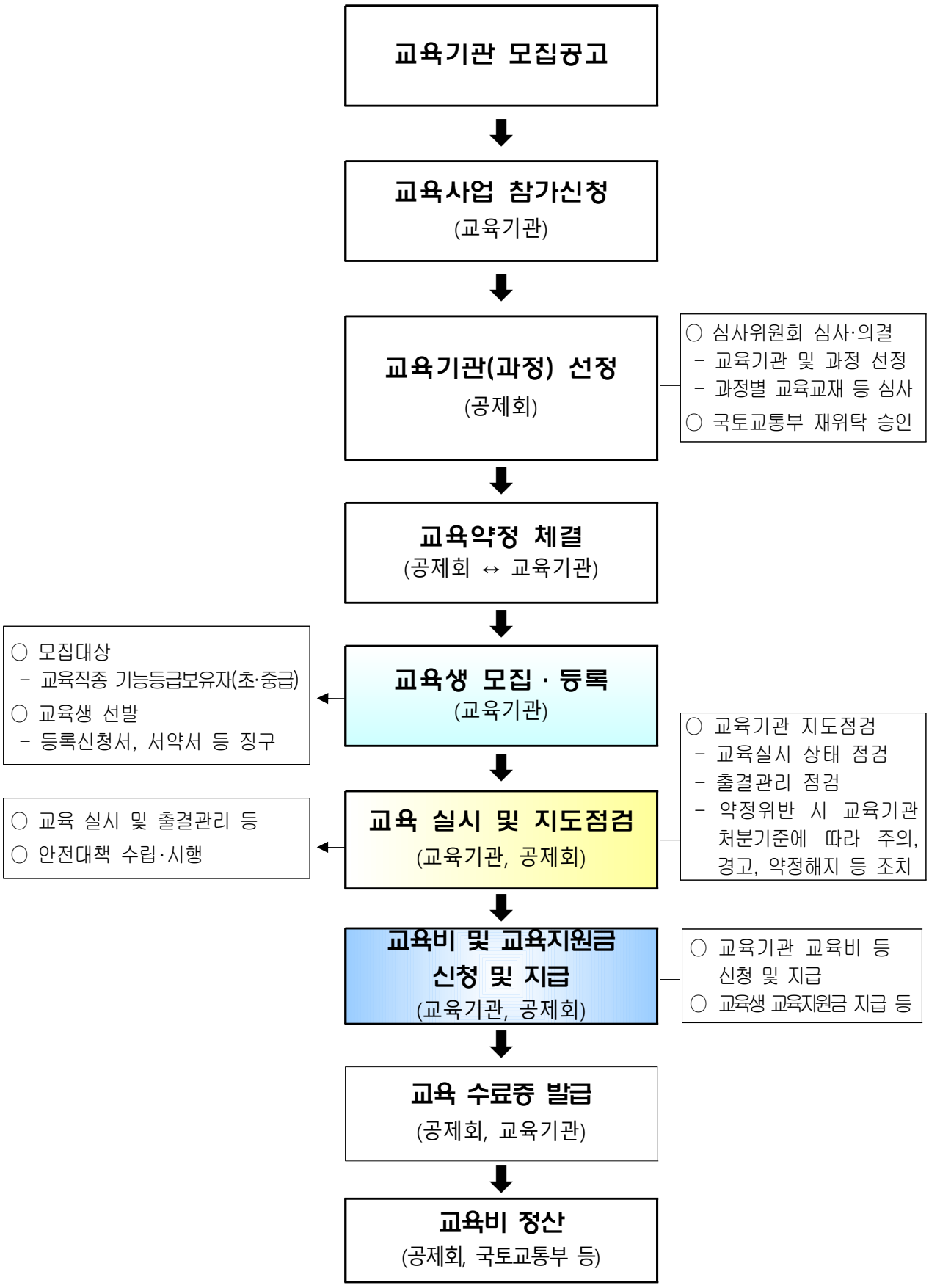
교육기관 모집공고
교육사업 참가신청
(교육기관)
교육기관(과정) 선정
(공제회)
○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 교육기관 및 과정 선정
- 과정별 교육교재 등 심사
○ 국토교통부 재위탁 승인
교육약정 체결
(공제회 ↔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 등록
(교육기관)
○ 모집대상
- 교육직종 기능등급보유자(초·중급)
○ 교육생 선발
- 등록신청서, 서약서 등 징구
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
(교육기관, 공제회)
○ 교육 실시 및 출결관리 등
○ 안전대책 수립·시행
○ 교육기관 지도점검
- 교육실시 상태 점검
- 출결관리 점검
- 약정위반 시 교육기관 처분기준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해지 등 조치
교육비 및 교육지원금 신청 및 지급
(교육기관, 공제회)
○ 교육기관 교육비 등 신청 및 지급
○ 교육생 교육지원금 지급 등
교육 수료증 발급
(공제회, 교육기관)
교육비 정산
(공제회, 국토교통부 등)

6. 교육기관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 신청 교육기관 **서류심사***를 통해 교육직종별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으로 서류심사 통과기관 선정

※ 서류심사 통과 기관 수 등은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서류심사 통과 교육기관 대상 **현장심사****를 통해 교육직종별 **고득점 점수(서류심사 점수 + 현장심사 점수)순**으로 최종 위탁 교육기관 선정

※ 교육직종별 최종 위탁교육기관의 수 등은 교육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

***(서류심사)** 기관건전성, 교육시설·장비, 교육과정 등 평가

****(현장심사)** 기본소양 교육,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사 ※ 서류심사 제출서류 일치 확인 등 병행

< 교육기관 선정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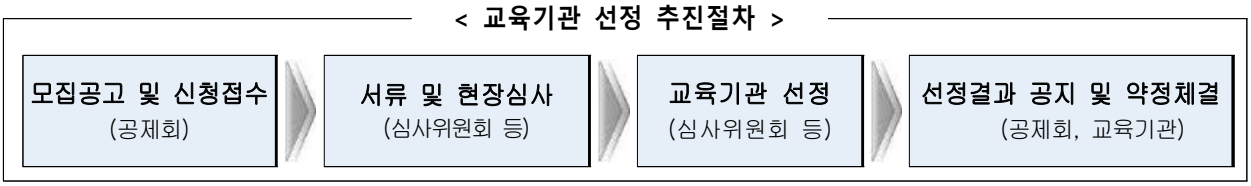

□ 교육기관 선정 심사기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서류심사	**70**	
기관건전성 (5점)	**소계**	**5**	
	1. 세금 체불내역	5	
교육시설·장비 (30점)	**소계**	**30**	
	2.1 시설환경	15	
	2.2 교육 장비 등 확보 및 관리	15	
교육과정 평가 (35점)	**소계**	**35**	
	3.1 교육과정 운영 및 내용 적절성	20	
	3.2 교육생 모집 및 관리 적절성	15	
	현장심사	**30**	
교육과정 운영 현장심사 (30점)	**소계**	**30**	
	4.1 기본소양 교육 과정	5	
	4.2 이론교육 과정	10	
	4.3 실기교육 과정	15	

7. 평가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

○ 교육기관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참여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교육직종별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으로 서류심사 통과기관 선정

※ 서류심사 통과 기관 수는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자료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항목을 최하위 점수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재활용, 기관별 전문성 및 노하우 등에 대한 PT발표, 질의응답 등 현장심사* 실시

* 각 기관별로 현장평가 일정 등을 개별 통보 예정
현장심사 시 서류평가 시 제출서류와 실제현황 일치여부 등 확인

< 현장심사 내용 >

평가항목	배점	심사시간	평가 내용	평가위원
기본소양 교육 운영	5	15분	기본소양 교육과정 및 교재 등 발표 및 질의응답	교육직종별 심사위원
이론교육 운영	10	15분	이론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등 발표 및 질의응답	
실기교육 운영	15	30분	실기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등 발표 및 질의응답	

※ PT발표자는 교육기관 대표자, 교사 등 교육기관 자율 선택 가능
발표자료는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신청서 등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실기교육 PT 발표 시 직종별 교육계획서(붙임2)에 따른 실습 결과물(샘플 사진 등) 준비 필요
(예시) **(형틀목공)** 거푸집 설치 등, **(조적)** 시멘트 벽돌 쌓기 등, **(방수)** 바탕면 액체방수 시공 등, **(타일)** 벽면 타일 시공 등, **(도장)** 수성 페인트 시공 등, **(배관)** 배관 접합 및 시공 등

○ 현장심사 시 통해 제출서류와의 일치 및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과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

- 현장심사 결과 제출서류 등이 불일치한 경우 재평가한 점수의 아래 단계 점수를 부여하고, 중대한 허위 행위 등 적발 시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적격 처리 등 가능

□ 위탁 교육기관 최종 선정

○ 서류심사를 통과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해 교육직종별 교육기관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하고, 교육직종별 최종 위탁교육기관의 수 등은 교육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① 현장심사 ② 교육과정 평가 ③ 교육시설·장비 ④ 기관 건전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8. 교육기관 선정의 유효기간

○ 본 공고에 따른 교육 대행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3.3.31까지이며, 교육 모집인원 및 예산소진 등에 따라 조기 교육종료 등 가능

9. 유의사항

□ 서류심사 등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평가 과정 또는 선정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 교육기관 선정 취소 가능

□ 현장심사

○ 지정된 일자에 현장실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은 제출 자료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의 수집 및 추가 요청 가능

□ 기타사항

○ 최종 선정된 교육기관은 약정 체결 후 공제회 지정 교육시작일* 부터 교육과정 시행

*(교육시작일) '22.12.5(월) 예정(변동 가능)

○ 교육기관은 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하나로 전자카드 등을 통해 교육생 출결관리 필요

○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필요 시 공제회 승인신청 등을 통해 교사 자격요건 등을 갖춘 대체교사 확보 등 필요

○ 교육기관은 과업수행 중 허위 출결, 교육비 부정수급, 교육 관련 저작권 침해 등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공제회는 약정 해지 등 약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조치 가능

10. 교육기관 지정 신청방법

○ 교육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서식)를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교육직종이 복수인 경우 신청서는 교육직종별로 각각 제출

※ (예시) 타일, 방수 2개 직종 신청 → 붙임1 신청서 및 증빙서류 2건 각각 작성(타일, 방수)

○ 붙임1.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파일(hwp, pdf) 또는 인쇄물 형태로 제출

11. 향후 일정 및 문의처

□ 향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1. 사업 설명회	▪ 참여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22.11.4.
2. 신규 모집 공고	▪ 교육기관 신규 모집 공고	'22.11.9
3. 신청서 접수	▪ 교육기관 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22.11.9~18
4. 교육기관 심사	▪ 기관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22.11월 중
5. 교육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 교육기관 선정결과 공지 및 약정 체결	'22.11월 말
6. 6개 직종 교육시행	▪ 6개 직종 교육실시('22.12~'23.3 예정)	'22.12월 초

※ 상기 일정 등을 대내외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관리팀 임화진 팀장, 송진욱 과장, 박지은 주임

- (전화) 02-519-2101~5 (이메일) grade@cw.or.kr

【붙임】

1.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부
2. 기능등급제 직종별 교육계획서(참고자료) 1부. 끝.